

##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. 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# 제안이유

- 종전에 여성단체총연합회와 여성단체협의회로 구분되었던 안산시 여성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로 통합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“여성단체연합회”를 “여성단체협의회”로 변경함(안 제31조 내지 제33호).

### 개정조례안 : 별첨

#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#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#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#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###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안산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칙

##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여성단체연합회”를 “여성단체협의회”로 한다.

제31조의 제목 “여성단체연합회”를 “여성단체협의회”로 하고, 동조중 “여성단체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”를 “여성단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2조 및 제33조중 “연합회”를 각각 “협의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사회여성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사회여성과장 최 병 덕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여성정책담당 박 미 라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형 환 (행정 2262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장 여성단체연합회</u>	<u>제4장 여성단체협의회</u>
<p>제31조 (<u>여성단체연합회</u>) 여성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단체활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<u>여성단체연합회</u> 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제32조(구성등) <u>연합회</u>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제33조(경비보조등) 시장은 <u>연합회</u>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.</p>	<p>제31조 (<u>여성단체협의회</u>) .....  .....  .....  ..... <u>여성단체협의회</u>  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.....</p> <p>제32조(구성등) <u>협의회</u> .....  .....</p> <p>제33조(경비보조등) .. <u>협의회</u> .....  .....</p>